

## 2015년 제3회 행정사 1차 국가자격시험 문제(A형) - 행정법

김용철 교수

노량진 월비스고시학원

홈페이지: [www.yongcheolsam.com](http://www.yongcheolsam.com)

### 1.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 행정사-제3회)

- 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② 법령은 지역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전역에 걸쳐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일부지역에만 적용될 수 있다.
- ③ 일반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법령의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④ 인·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행정행위는 신청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⑤ 법령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외국인에 대하여 특칙을 두거나 상호주의가 적용될 수 없다.

정답 ② 특정지역에만 적용되는 법이 있다.(예. 수도권정비법, 제주특별자치도법 등)

/① 법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 후 20일(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관련된 법령은 30일)이 경과됨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③ 이미 종결된 행위에 새로운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국민에게 권익을 부여하는 경우·중대한 공익과 관련된 경우에는 소급이 허용될 수 있다. 또한 종결되지 않고 법령의 시행일에도 계속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법을 소급적용할 수 있다(부진정소급)

④ 처분의 신청시 법령과 처분시 법령이 상이한 경우에는 처분시 법령에 의한다.

⑤ 법령의 장소적·대인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속지주의에 해당되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행정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 본국법을 적용받기도 하고, 상호보증주의(예, 국가배상법) 입각하기도 한다.

### 2. 행정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 행정사-제3회)

- ① 헌법의 구체화법인 행정법의 대상으로서 행정은 권력분립원리에 따라 확립된 개념이다.
- ② 행정의 목표로서 공익의 개념은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의 개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고정적인 것이다.
- ③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판례에서 인정하 바 있다.
- ④ 행정을 공법상 행정과 사법상 행정으로 구분하는 주된 실익은 양자에 적용되는 실체법이 다르고, 권리구제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 ⑤ 급부행정은 공법적인 방식 외에 사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정답 ② 행정의 최종적인 목표인 공익의 개념은 불확정개념에 해당되며, 시대나 국가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 ① 행정의 개념은 권력분립에 의해 성립된 개념이다.

③ 우리의 경우 계엄선포 등의 사안에서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④ 공행정과 사행정을 구분하는 실익은 적용되는 법원리와 재판관할 · 소송절차의 상이 등이다.

### 3. 행정절차법상 행정상 입법예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5. 행정사-제3회)

- ㄱ. 입법예고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ㄴ.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예고를 하여야 한다.
- ㄷ.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 ㄹ.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④

#### 행정입법예고

##### 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삭제

③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④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

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입법예고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예고방법)

①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할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행정청은 제5항에 따른 복사에 드는 비용을 복사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43조 (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44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의견의 처리방법 및 처리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 (공청회)

① 행정청은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하여는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 4.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 행정사-제3회)

①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행정지도는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다.

④ 법치주의의 붕괴, 책임소재의 불분명으로 인한 책임행정의 이탈 등은 행정지도의 문제점에 해당된다.

⑤ 주무부처 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규제적·구속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정답 ③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① 행정절차법 제50조 규정이다.

② 행정절차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이다.

④ 행정지도는 법률에 근거없이 가능하며, 구제의 불확실성, 책임소재의 불분명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⑤ 교육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행정지도에 불과하지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5.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 행정사-제3회)

① 허가권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적법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② 허가는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한다.

③ 허가의 취소사유가 발생하면 취소가 가능하지만 일부취소는 불가능하다.

④ 허가가 있으면 당해 허가의 대상이 된 행위에 대한 금지가 해제될 뿐만 아니라 타법에 의한 금지까지 해제된다.

⑤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①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에 해당된다. 따라서 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 상대방이 신청해 오는 경우 중대공익사유 등이 없는 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출원없는 허가도 가능할 수 있다.(예, 통행금지해제 등)

③ 허가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처분에 가분성이 있으면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예, 여러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특정면허만 취소하는 경우 등)

④ 타법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⑤ 단순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하지만 인·허가의제 효과의 건축신고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 6.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 행정사-제3회)

①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②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 당해 재량준칙에 자기구속력을 인정한다.

③ 행정규칙의 제정에는 법령의 수권을 요하지 않는다.

④ 행정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그 처분은 절차상의 하자로 위법한 처분이 된다.

⑤ 행정규칙은 대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행위이므로 원칙상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정답 ④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님이 원칙이다. 따라서 행정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지 않고, 단지 처분을 행한 공무원은 징계의 사유만 될 뿐이다.

/ 대법원도 재량준칙이 평등등과 결합된 자기구속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다. 행정규칙은 법령의 근거없이 제정이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도 있다.(예, 94년도 서울대입시요강에서 제2외국어에 일본어가 제외된 경우 등)

### 7.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2015. 행정사-제3회)

- ① 행정상 입법예고                      ② 신고                      ③ 행정계획
- ④ 행정예고                                ⑤ 행정지도

정답 ③ 행정절차법에 행정계획에 대한 확정절차는 규정이 없다. 총칙, 처분절차, 신고절차, 행정입법예고절차, 행정예고절차, 행정지도절차, 국민참여확대, 보칙이 규정되어 있다.

### 8.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 행정사-제3회)

- ① 행정청이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다른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다.
- ②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는 데에는 광범위한 계획재량을 가지더라도, 행정계획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까지 비교·교량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 ③ 국토이용계획은 계획의 확정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이나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 없음이 원칙이다.
- ④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 ⑤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처분은 광범위한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는 이상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행정계획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정한 활동기준이나 그 설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행정주체의 위와 같은 형성의 자유가 무제한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행정계획에서는 그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사이에서나 사익 사이에서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익형량

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될 수 있다

(대판 2014.07.10. 선고 2012두2467)

/①양립될 수 없는 2중 계획은 후행계획에 의해 선행계획은 적법하게 철회·취소된다. 다만 후행계획의 행정청은 선행계획에 대한 권한청이어야 한다.

③·④ 원칙적으로 행정계획에 대한 국민의 신청권은 부정된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3.09.23. 선고 2001두10936)고 한다.

####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 행정사-제3회)

- ①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한다.
- ②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정보공개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정보공개청구제도는 행정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위한 것이므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권리의 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 ④ 외국인은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정답 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판 2014.06.12. 선고 2013두4309)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대판 2006.05.25. 선고 2006두3049)

②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청구권을 갖는다. 자연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등이 해당된다.

③ 교도소에 복역 중인 갑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자신에 대한 불기소사건 수사기록 중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검사장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갑의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14.12.24. 선고 2014두9349)

④ 정보공개법시행령에 의하면 학술연구를 위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국내에 사무소를 설

치하고 있는 외국법인 등은 정보공개청구권이 있다.

**10.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 행정사-제3회)**

- ① 행정대집행에 있어서 1차 계고에 이어 2차 계고를 행한 경우, 2차 계고는 새로운 행정 처분이다.
- ②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비상시 등 그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는 경우 당해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 ③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④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의무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 ⑤ 비대체적 부작위의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대집행명령은 위법하다.

정답 ① 시장이 무허가건물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원고들이 불응하자 다시 2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의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하였다면 원고들의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으로서 발생하였고 제2차의 계고처분은 원고들에게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대판 1991.01.25. 선고 90누5962)

**11.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 행정사-제3회)**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사항을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는 당해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 ⑤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⑤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는 점,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개개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조사 종료 후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만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에 앞서 세무조사결정에 대하여 다툼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판 2011.03.10. 선고 2009두23617)

/ 나머지는 행정조사기본법의 내용이다.

**12. 행정소송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 행정사-제3회)**

- ① 판례는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예방적 금지소송)을 인정한다.
- ② 주민소송은 주관적 소송에 해당한다.
- ③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중심주의를 취하고 있다.
- ④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는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은 허용된다.
- ⑤ 당사자소송의 인정에 있어서는 개별법의 근거가 필요하다.

정답 ③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소송은 주로 취소소송에 대한 준용규정으로 되어 있다.

/ ①대법원은 법정외항고소송(무명항고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② 현행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객관적 소송이다.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에 해당된다.

④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청구과 취소청구는 선택적 ·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주위적 · 예비적 병합은 허용된다.

⑤ 행정법 관계에서 법률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소송이 가능한 것이 개별법에 당사자소송의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3.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 행정사-제3회)**

- 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처분청에 대한 진정서 제출은 행정심판법 소정의 행정심판청구가 될 수 있다.
- ②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일은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이다.
- ③ 행정심판에 있어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④ 형성적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행정처분은 재결 자체에 의하여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된다.
- ⑤ 행정심판법상 재결의 기속력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뿐만 아니라 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다른 처분에 대하여도 미친다.

정답 ⑤ 재결의 기속력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사안이 다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으며 혹은 같은 사안이라도 재량의 경우에는 다른 처분의 할 경우에는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

/① 비록 제목이 '진정서'로 되어 있고, 재결청의 표시,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등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사항들을 구분하

여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여 행정심판청구서로서의 형식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청구인인 처분청과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기명이 되어 있으며, 문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내용과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을 알 수 있는 경우, 위 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재결정,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등의 내용과 날인 등의 불비한 점은 보정이 가능하므로 위 문서를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로 보는 것이 옳다(대판 2000.06.09. 선고 98두2621)

#### 14.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 행정사-제3회)

- ①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없다.
- ②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도 허용된다.
- ③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준다.
- ④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⑤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없다.

정답 ④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이다.

#### 제23조 (집행정지)

-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소명이 있어야 한다.
-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 ⑥ 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 제24조 (집행정지의 취소)

- ①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과 이에 대한 불복의 경우에는 제23조제4

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5.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 행정사-제3회)

- ㄱ.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 ㄴ.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ㄷ.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 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도 감사할 수 있다.
- ㄹ.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ㄴ·ㄹ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다.(대판 1992. 7. 28, 92추31)

ㄱ 지방의회가 단순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 집행기관의 장의 인사권의 본질적 부분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에 위배된다

(대판 2002.03.15. 선고 2001추95)

ㄷ 지방의회는 국가사무 등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없다.

16. 지방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 행정사-제3회)

- 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부분으로 헌법이 인정하는 기관이다.
- ② 지방의회는 사무직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장이 임명한다.
- ③ 지방의회는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의원 3명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의회의원이 있으면 관계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⑤ 지방의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을 갖는다.

정답 ② 지방자치법 제91조

제91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1. 별정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

**17. 경찰권발동의 조리상의 한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5. 행정사-제3회)**

- ① 사주소불가침의 원칙      ② 경찰비례의 원칙      ③ 경찰공공의 원칙  
④ 경찰평등의 원칙      ⑤ 경찰적극목적의 원칙

정답 ⑤ 경찰소극목적의 원칙이다. 즉 경찰권의 발동은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위해의 방지라는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만 발동될 수 있을 뿐이고 복리증진 등 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발동할 수 없다./사주소라도 직접공중과 접촉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에는 간섭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경찰공공의 원칙은 사생활불가침의 원칙과 사주소불가침의 원칙을 합한 말이다.

**18.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 행정사-제3회)**

- ①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자연공물인 바닷가를 매립함과 동시에 준공인가신청 및 준공인가를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더라도 불법이 아니다.  
②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 하더라도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행정재산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불용통물이지만 관재 당국이 이를 모르고 매각하였다면 그 매매는 유효하다.  
⑤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다.

정답 ③ 공유수면은 소위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대판 2013.06.13. 선고 2012두2764)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된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로서 바닷가를 매립한 지방자치단체가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될 바닷가 매립지에 관한 내용을 누락한 채 준공인가를 받음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바닷가 매립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한 경우,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국가가 준공인가권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대판 2014.05.29. 선고 2011다35258)

- ② 도로점용허가는 공물의 사용·수익허가로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④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시효취

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관재당국이 이를 모르고 행정재산을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매는 당연무효이다.(대판 1996.05.28. 선고 95다52383)

⑤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지대물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 아니다(대판 1990. 2. 13, 89다카23022)

**19. 공용부담 및 공용수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 행정사-제3회)**

- ① 공용수용은 당사자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최소침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공용부담이라 함은 일정한 공공복리를 적극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부과되는 공법상의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 ③ 판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을 사법상의 법률행위로 본다.
- ④ 공용수용에 있어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보상금 또는 공탁금을 받는다.
- ⑤ 헌법재판소는 환매권을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답 ① 공용수용의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작용으로서 공익과 사익간의 형량등을 통한 비례원칙이 충족되어야 한다.

**20.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2015. 행정사-제3회)**

- ① 규제 옴부즈만 제도      ② 규제법정주의      ③ 규제영향분석
- ④ 규제의 등록              ⑤ 규제심사제도

정답 ① 행정규제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다.

/②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다.

③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다.

④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에 규정되어 있다

⑤ 행정규제기본법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부분에 제7조부터 규정되어 있다.